'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주요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2항 :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의 범위)
- 제1항 :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이하 2호 ~ 6호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 제1항 :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1. 생략
2.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4호 생략
5. 잡종재산 - 제1호내지 제4호외의 모든 재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1항 : 생략
- 제2항 :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98. 7. 16 개정)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에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에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제3항 ~ 제5항 생략

◉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1항 :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항 : 생략

◉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 제1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항 ~ 제3항 생략

2. 검토의견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96년 전원 농촌마을(패키지 마을)조성 사업계획에 따라 마장면 덕평리 149-14번지외 35필지 3,231㎡를 추정가액 1억 7,328만원에 공공용지로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84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계획안이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매수하려는 위 토지는 패키지마을내의 마을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됨.